

# 사회봉사단 운영규정

개정 2019.09.16. 개정 2026.03.20.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회봉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성원들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권장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봉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생과 교직원에 의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회봉사활동을 포함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생 : 총학생회, 각 계열 및 (학)과, 등록 동아리 등
2. 교수 : 교수친목회
3. 직원 : 직원상조회

### 제3조 (기능)

사회봉사단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봉사단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사회봉사의 행·재정적 지원 및 봉사자 관리
3.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
4. 유관기관과의 봉사활동 연계
5. 기타 사회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 2 장 조 직

### 제4조 (운영)

- ① 사회봉사단은 학생팀에 둔다.<개정 2019.09.16., 2026.03.20.>
- ② 사회봉사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둘 수 있다.
- ③ 단장은 사회봉사단을 대표하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사회봉사단에는 사업수행을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5조 <삭제 2019.09.16.>

제6조 <삭제 2019.09.16.>

제7조 <삭제 2019.09.16.>

제8조 <삭제 2019.09.16.>

제9조 <삭제 2019.09.16.>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본조신설 2019.09.16.>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단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기타) <조옮김 제10조 → 제11조 2019.09.16.>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5.09.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에 『사회봉사단운영지침(2012.12.18. 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9.09.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3.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